##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4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김교흥ㆍ이기헌ㆍ문진석

김윤덕 • 허종식 • 모경종

이해식 • 이훈기 • 소병훈

노종면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·수소유통전담기관·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신에너지인 수소분야 기술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기술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진보된 신기술로써 현행과 같은 전담기관 지정방식보다는 수소 생산·유통·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·유통·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과 국제사회에서 수소경제산업의 선도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

제32조의2 신설 등).

##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2(한국수소기술원의 설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의 생산·유통·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위 하여 한국수소기술원(이하 "수소기술원"이라 한다)를 설립한다.
  - ② 수소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기술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  - ④ 수소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.
  - ⑤ 이 법에 따른 수소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소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56조제2항 중 "진흥전담기관"을 "수소기술원, 진흥전담기관"으로 한다.

제6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소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2조의2(한국수소기술원의 설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의 생산·유통·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(이하 "수소기술원"이라 한다)를 설립한다. ② 수소기술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기술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또는 보조할 수 있다. ④ 수소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. ⑤ 이 법에 따른 수소기술원이아닌 자는 한국수소기술원 또는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- 제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 략)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진흥전담기관, 유통전담기관, 안전전담기관, 한국가스안전공사, 인증기관,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.
- 제6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·1의2. (생략) <u><신 설></u>
  - 2. ~ 6. (생략)
  - ② · ③ (생 략)

제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(현행과 같음)
②
수소기술원, 진흥전담기
<u>관</u>
제62조(과태료) ①
1. • 1의2. (현행과 같음)
1의3.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
여 한국수소기술원 또는 이와
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